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찬성자 : 25명)

나. 의안번호 : 제 1542 호

다. 발의일자 : 2024. 2. 2.

라. 회부일자 : 2024. 2. 7.

2. 제안이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준하여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사항에 대해 자치구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제8호)

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의 2)

다.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후 평가를 현실성 있게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14. ~ 2. 1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 및 조례를 참고하여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1호, 제9조의2,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②·③ (생략)	제3조(기능)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 5. (생략)

② ~ ⑧ (생략)

<신설>

제11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

1. ----- 제11호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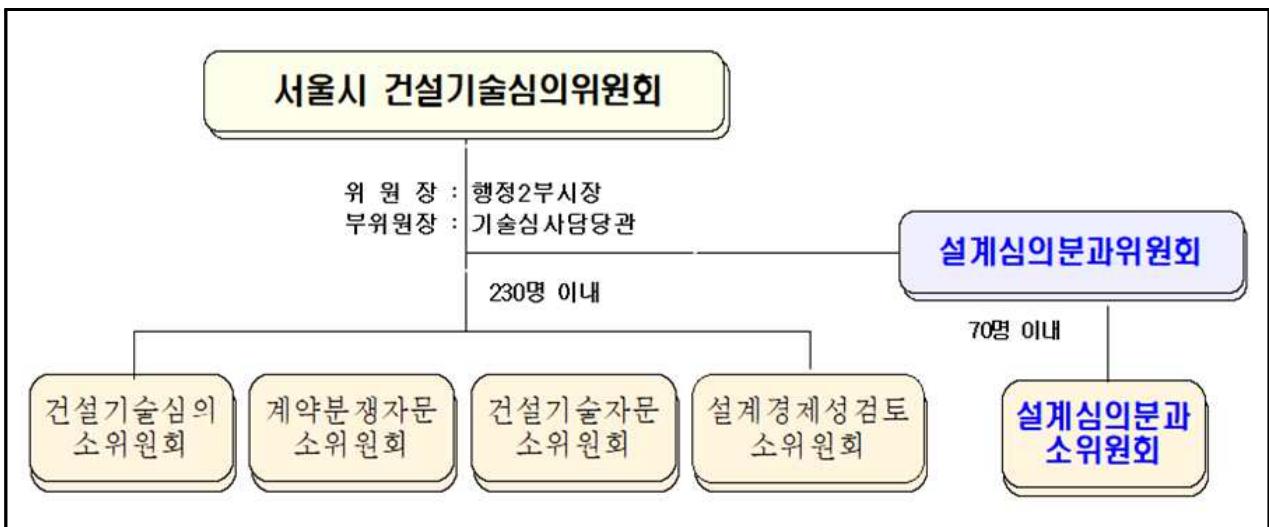
② -----

-----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

③ ----- 제2항에 따른 확인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제5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²⁾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 1명(기술심사담당관)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³⁾이 5개의 소위원회를 구성(그림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현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 최근 4년간('20년~'23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99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의 별 횟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매년 증가 추세('20년:282건→'23년:334건)에 있음.

[표] 최근 4년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연도	계	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설계심의사후평가	설계경제성(VE)검토	공사기간적정성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자문
'23	334	101	65	68	3	8	6	-	39	19	21	4	-
'22	303	73	56	76	-	3	4	8	40	13	21	8	1
'21	279	73	63	89	1	1	2	-	31	3	10	6	-
'20	282	82	70	43	1	2	2	8	60	8	0	6	-

[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별 심의 종류 및 근거

소위원회	심 의 종 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근거 조항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심의 · 입찰방법심의 · 입찰안내서심의 · 정밀안전진단심의 ·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 제6조제1항제1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	· 제3조제2항제1호 · 제6조제1항제3호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심의 사후평가	·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제6조제1항제4호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 설계경제성(VE)검토	· 제3조제3항제1호 · 제6조제1항제5호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	· 제3조제1항제3호 · 제6조제1항제2호

■ 개정안 주요 조문별 의견

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 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제8호)

- 안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은, 위원회 산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제4항제5호가 '20.12.1일 자로 같은 조 제5항제5호로 내용 변경 없이 항 번호가 개정⁴⁾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인 “영 제19조제4항제5호”를 “영 제19조제5항제5호”로 변경하는 한편,
 - 같은 호의 후단에 “(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단서로 추가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자치구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⁵⁾와 분담코자 하는 것임.
- 현행의 경우, 시의 사업소 및 공사·공단 그리고 자치구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 시의 소위원회가 전담하여 심의(〔표〕참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위원회의 전체 심의 건수가 매년 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1호, 2020.12.1. 타법개정)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략)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속적으로 증가추세('20년:208건→'23년291건)⁶⁾에 있는바,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337	61	43	89	76	68
사·사업소	167	36	26	41	33	31
공사·공단	75	19	8	16	14	18
자치구	95	6	9	32	29	19

- 현재 자치구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기능이 없어 단순 자문 형태로 운영⁷⁾되고 있는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최근에 시가 활성화하여 역할을 분담 하고자 표준조례안([붙임] 참고)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23.12.14.)하였고,
- 이 표준조례안에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자치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표] 참고)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6) 최근 4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

연도	계	용역 발주 심의	설계 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 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23	291	101	65	68	3	8	6	19	21
'22	246	73	56	76	-	3	4	13	21
'21	242	73	63	89	1	1	2	3	10
'20	208	82	70	43	1	2	2	8	0

7) 서울시 내 자치구 중 현재(2024.02.14.)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총 15개 자치구이나 단순 자문 형태로 운영 중.

근 거	갯 수	자치구 명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총 10개 자치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총 5개 자치구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표] 「서울특별시 ○○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 4. (생략)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 따라서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 소위원회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정비라 하겠음.

나. 설계적격심의 속기록 및 공개 규정 삭제 관련(제5조의2 삭제)

- 현행 제5조의2는, 위원회 산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3호8)에 따른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회의 기록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시는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15일간⁹⁾ 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

- 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② ~ ③ (생략)
- 9)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국토교통부 제10절(심의 후속단계)
10-2(평가내용 공개)
· 심의기관은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집계표, 위원별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고 그 건수는 연평균 6건에 해당함([표] 참조).

[표] 최근 3년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설계적격심의 시 홈페이지 공개 건수

구분	계	2023	2022	2021
건 수	18	4	8	6

- 따라서, 분과소위원회의 설계적격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소위원회의 회의¹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 및 공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바,
-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안 제9조의2 신설을 통해 포괄 및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련 (안 제9조의2 신설)

- 안 제9조의2의 신설은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였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관련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참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세부 감점내용 등을 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 등에 15일간 공개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분과소위원회를 제외한 소위원회별 심의현황

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심의종류	· 설계심의 · 입찰방법심의 · 입찰안내서심의 · 정밀안전진단심의 ·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계약분쟁자문	· 설계심의 사후평가	· 설계경제성(VE)검토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¹¹⁾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 중 별도의 공개 규정이 있는 ‘설계경제성(VE)검토’¹²⁾와 ‘설계적격심의’¹³⁾를 제외한,
- 나머지 ‘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능

- 1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61조(사후관리) 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력평가기준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설계심의 사후 평가’, ‘공사기간적정성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에 대해,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표〕 참조)를 준용하여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 그리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

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한편, 안 제4항에서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인 ‘설계적격심의’의 공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6항¹⁴⁾에서 분과소위원회 심의인 ‘설계적격심의’

1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 ⑪ (생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호나목 및 마목에 관한 사항

에 대한 공개 사항을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라. '설계심의 사후평가' 용어 재정립 관련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데,
 - 이는, 현행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설계심의 및 자문한 대상(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교량 등 특수공종 50억 이상 등) 중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가 임의로 시공 중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설계심의 사후평가'로 명명하고 있으나,
 - 상위 법령에 의한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유사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후평가의 실질적 업무인 '설계심의 이행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으로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로, 상위 법령에 의한 사후 평가제도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법 제50조¹⁵⁾ 및 영 제82조¹⁶⁾에 근거하여 시가 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설용역의 시공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주부서를 대행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법 제52조¹⁷⁾ 및 영 제86조¹⁸⁾에 따라 시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발주부서가 자체적으로 사후 평가하는 것임.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17)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② ~ ⑦ (생략)